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22-914

나에게 필요한 육아정보가 한눈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대한민국 육아정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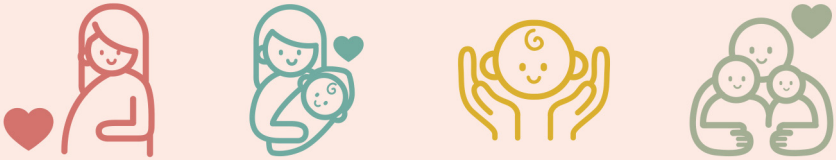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알아두면 쓸데있는 대한민국 육아정보"는

만 0~5세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안내책자입니다.

이 책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양육정책(2022. 8월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의 답을 찾다, 보육의 힘을 믿다
한국보육진흥원

목차

I. 생애주기별 육아지원 서비스

임신

0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02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배부
03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03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04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0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5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 운영
0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07 Mom 편한 KTX 서비스
0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08 영양플러스

출산

09 출산비용 지원
09 생계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1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1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13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5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15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서비스

양육

16 육아휴직 급여지원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18 첫만남이용권(영아기 집중투자)
19 가정양육수당 지원
20 영아수당
20 아동수당
21 시간제보육서비스
22 아이돌봄 서비스
23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2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5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상담
25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놀이(체험)실 운영
26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28 가족센터 운영
2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육

29 만 0~2세 보육료 지원
30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31 연장형 보육료 지원
31 방과후 보육료 지원
32 어린이집 입소 신청
33 국민행복카드
34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34 제4차 표준보육과정 소개
35 2019 개정 누리과정 소개
36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공개

II. 대상특성별 육아지원 서비스

한부모

37 가족상담전화
37 미혼모·부 초기지원
38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39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
39 한부모가족 심리 상담 지원

다문화

40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4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42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4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장애인

44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45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45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46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4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7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4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48 발달재활 서비스
48 언어발달지원사업
4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5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기타 지원

5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52 입양아동 지원
5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3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54 가정위탁아동 지원
55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56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5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57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Ⅰ. 생애주기별 육아지원 서비스

임신

0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임신 예정 가족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방법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및 정부 24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3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배부

대상

-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내용

-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방법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4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5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 임산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방법

-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산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담당부처

- 질병관리청

06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내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입원·외래 불문)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비용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내용

-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방법

-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8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 운영

대상

- 전 국민(예비부부 및 임산부)

내용

- 임신 중 감기약, 피임약 등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무료상담 제공
  -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거점협력병원을 운영하여 근접거리 상담 실시

    * 서울 중앙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내, 무료 상담전화 1588-7309
  -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나 임신 초기 임신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 흡연, 음주 등에 노출된 임신부에게 노출에 따른 기형 발생 위험성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모유 수유부가 부득이하게 급·만성질환으로 약물 등에 노출되는 경우, 위험 및 안전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여성에게 임신 시 태아에 위험이 되는 요인에 대한 평가 및 정보 제공

방법

-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사이트(http://www.mothersafe.c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9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0 Mom 편한 KTX 서비스

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내용

- 출산(예정)+1년 기간까지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 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담당부처

- 한국철도공사

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내용

•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매 주문 시 20% 본인 부담
  - 품목 :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공급한도 : 월 4회(연 6회)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주문가능
  - 지원형태 : 선택형, 완성형 꾸머리 공급

방법

• 사업신청(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 자치구(신청자격 조회 후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문자발송) ⇨ 지원대상자(온라인회원가입, 꾸러미 주문)

담당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12 영양플러스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

01 출산비용 지원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2 생계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내용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상

- 출산자(산모) 본인 혹은 배우자(대리인),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 또는 시부모)

내용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전국공통 :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
  - 다자녀 :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지역 난방비)

방법

-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신분증 필참)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담당부처

- 국민연금공단

07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방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0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09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10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서비스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다자녀 가구와 중복 불가)

내용

-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만 6천원 한도)

방법

- 한전고객센터(123) 유선 신청 및 인터넷 신청

담당부처

- 한국전기공사

양육

01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03 첫만남이용권(영아기 집중투자)

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4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table>
<tr><th colspan="2">양육수당</th><th colspan="2">농어촌 양육수당</th><th colspan="2">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h>연령(개월)</th><th>금액</th><th>연령(개월)</th><th>금액</th><th>연령(개월)</th><th>금액</th></tr>
<tr><td>0~11개월</td><td>20만 원</td><td>0~11개월</td><td>20만 원</td><td rowspan="3">0~35개월</td><td rowspan="3">20만 원</td></tr>
<tr><td>12~23개월</td><td>15만 원</td><td>12~23개월</td><td>17만 7,000원</td></tr>
<tr><td>24~35개월</td><td>10만 원</td><td>24~35개월</td><td>15만 6,000원</td></tr>
<tr><td rowspan="2">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만 원</td><td>36~47개월</td><td>12만 9,000원</td><td rowspan="2">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만 원</td></tr>
<tr><td>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td><td>10만 원</td></tr>
</table>

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 어린이집 입·퇴소 시, 보육료-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5 영아수당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	이용권(바우처)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필요(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6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내용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명 당 매월 10만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까지 확대 됨에 따라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14.2.1.이후 출생아)은 '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 가능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7 시간제보육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내용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정부 지원금	시간당 3천원
	부모 자부담	시간당 1천원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의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 사업] ⇨ [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확인가능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방법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
  (서비스 이용 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화
- 신청기간 :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8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시간제 서비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형	- 시간당 10,550원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사 활동 제외)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 일반형 + 돌봄 관련 가사 활동 제공(아동관련 세탁물, 놀이 공간 청소, 아동식사 조리 및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0,550원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 위생, 영양, 교육 등 영아 돌봄 관련 활동, 가사 활동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	- 1회 2시간 이상 / 시간당 12,660원 -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아동의 질병 관련 사항 매일 가정에 전달, 입원한 아동 병원 내 돌봄 서비스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
- 정회원이 되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종류

- 정기이용 : 다음달 희망 이용 일시와 돌봄 아동, 돌봄 요청사항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대기가정 등록 후 대기 신청 가능, 다음 달 희망 이용 일정 선택하여 신청
- 일시연계 :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3일 이내의 희망 이용일시와 돌봄 아동, 돌봄 요청사항 등록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신청방법은 정기이용과 동일,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해야 정부지원 가능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9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7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

내용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만 4~6세)
	Tdap/Td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 2세 이상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
수두	VAR	1	1회(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LJEV(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만 12세)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회(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사업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본 책자 138p) 소개 참조

방법

-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 방문

담당부처

- 질병관리청

11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상담

대상

- 취학 전 모든 영유아 및 부모

내용

- 온라인 양육상담
  - 대면, 화상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비대면상담(전화, 홈페이지 등)

※ 상담 운영방법 및 내용은 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놀이(체험)실 운영

대상

- 취학 전 모든 영유아 및 부모

내용

- 장난감, 도서 대여 지원

※ 장난감·도서 대여, 놀이(체험) 실은 센터 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놀이(체험) 공간 제공,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진행

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3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대상

- 영유아 부모 및 자녀, 관내 어린이집

내용

- 부모 됨, 영유아의 발달 등에 대하여 배우며 부모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돕는 교육으로 입문, 기본, 심화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과정상의 특성과 양육 사례별 대응 방법, 자녀 강점에 따른 놀이 방법 등을 안내

부모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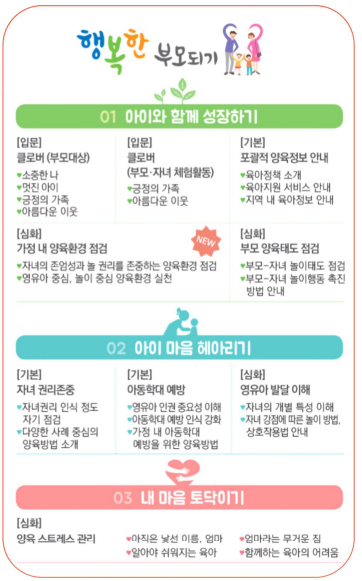

- 대면(화상),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비대면 부모교육 과정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부모의 신청에 따라 놀이키트 제공

놀이를 부탁해

다양한 연유아 놀이 활동을 소개하는 놀이 자료집 제공

놀(면서)자(란다) 알(수록)자(란다)

부모와 자녀의 놀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관찰 후 전문가 의견서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음 대화법

멋진아이 골든벨	소개 영상	멋진아이 유레카	소개 영상
	종일언어로 말하기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
	나의 대화신호등 알아보기		대화 CCTV
	Oh! No 대화, Oh! Yes 대화		위험한 칭찬, 위대한 칭찬 알아보기

애니메이션을 통해 들여다 보는 아이마음

낯가림	옆집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신체적 학대	엄마 내가 싫어?
애착물	내 친구 보들빼방	방임	혼자 있는 건, 정말 무서워
또래간 다툼	이게 같이 놀아도 돼?	영유아 성 행동 이해	새우가 좋아서 그랬어
형제간 다툼	마음이 기울어지면 터지는 풍선!		봄이는 아빠가 궁금해
미디어 중독	아빠보다 아빠어플!		
	딱 한 개만 보려고 했는데...		물려 봐서 미안해
편식	밥 먹기 전쟁!		
떼쓰기	나는 울! 아빠는 얼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엄마는 무무보다 스마트폰?
거친 놀이를 즐기는 아이	전쟁한 정글의 왕!		아빠와 봄이의 스마트폰 어드벤쳐
놀이의 중요성	장난감이 되어버린 전집		통이야 엄마랑 놀자

정보제공을 위한 부모 교육용 영상

영유아 성 행동 이해	영유아 성 발달 및 성 행동의 이해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NO, 스마트한 부모되기ON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영유아 성인지 감수성	영유아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부모교육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영유아의 행복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해요
	우리 집 양육환경을 점검해 보아요
	자녀를 존중하는 놀이 중심 양육환경을 실천해 보아요

부모의 마음을 토닥이는 시간	양육 스트레스 관리	소개 영상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참조

방법

- 영유아 부모 또는 양육자,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 가능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4 가족센터 운영

대상

• 가정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행사, 전통문화체험교실, 건강가정캠페인 등

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1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상

• 부모 및 자녀 등

내용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방법

•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보육

01 만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단위: 천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장애아
기본 보육 시간	정부지원보육료	499천원	439천원	364천원	532천원
	기관 보육료*	570천원	310천원	210천원	622천원
연장 보육료		3천원	2천원	2천원	3천원

* 기관 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

02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8,000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2년 기준)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교육부

03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내용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로 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내용

-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5 어린이집 입소 신청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내용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
-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보육 나이 만 0세~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대상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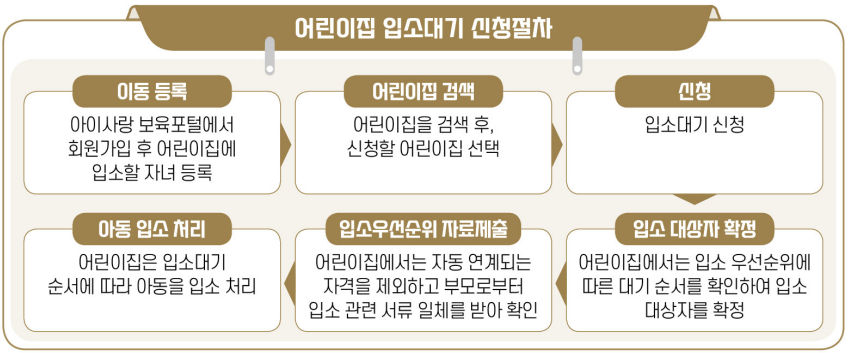

방법

- 온라인 신청(www.childcare.go.kr)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 방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6 국민행복카드

대상

- 취학 전 모든 영유아 및 부모

내용

-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 가능

방법

-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 가능
- 온라인 보조금 신청서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오프라인 보조금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07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대상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

내용

- 영유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영유아 등·하원 시간 안내로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방법

- 영유아가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태그 등)을 소지하고 어린이집 등·하원
-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등·하원 시각 기록 장치가 이를 감지, 서버 전송하여 시간 자동체크
- 영유아 등·하원 시간이 부모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

08 제4차 표준보육과정 소개

대상

- 만 0~5세 영유아

내용

-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 형성

이전과 달라진 점

· 바른인성 창의적인 인간성 강조 · 연령별, 수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역 중심 내용 · 일상생활, 휴식 등의 균형있는 영아 중심 강조 · '계획-실행-평가' 구조로 보육과정 운영	·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 과정 강조 · 내용 구성의 간략화를 통해 현장 자율성 확대 ·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력 지원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9 2019 개정 누리과정 소개

대상

- 만 3~5세 유아

내용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중시
- 2019 개정 누리과정
  - 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도적·자발적으로 놀이
  -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표준보육과정(복지부)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6개 영역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

3~5세 누리과정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교육부

10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공개

대상

- 영유아 부모

내용

- 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어린이·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제도를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3	내용
1.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명칭, 시설현황, 반수, 원아수, 직위·자격별 교직원 현황 등
2.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3.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회계 예·결산서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 건강검진현황, 환경 위생관리 현황, 사고 발생현황, 어린이집 급식현황, 안전점검현황,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등
6.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후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비교〉어린이집 명 입력, 검색〉어린이집 선택〉정보 확인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공시(http://www.childinfo.go.kr)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교육부

Ⅱ. 대상특성별 육아지원 서비스

한부모

01 가족상담전화

대상

- 미혼모·부, 한부모 등 모든 가족

내용

- 임신·출산갈등상담 : 임신, 출산 갈등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 양육비상담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관련 상담
- 한부모가족상담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가족서비스상담 : 가족갈등 심리정서지원, 가족정책 정보제공

방법

- 전화상담(☎1644-6621)
- 온라인상담 건강가정진흥원(www.childsupport.or.kr)
-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2 미혼모·부 초기지원

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내용

-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법

- 거주지 거점기관*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미혼모부자가족지원서비스 누리집(www.singlemamapapa.or.kr ⇨ 미혼모 임신출산상담지원)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3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9만 5,244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95만 6,051원) 이하

내용

-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4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

대상

-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5 한부모가족 심리 상담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이하 한부모가족

내용

- 개개인의 복합적인 욕구 및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 전문 상담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최대 16회기

방법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www.seoulhanbumo.or.kr)
- 홈페이지 신청 시 작성 후 추가 제출서류 등록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

01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만~49만 9,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자원 참고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내용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3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내용

-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대상

- 다문화가족

내용

-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0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대상

-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내용

-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시간 : 학기당 520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방법

- 국공립 유치원, 다문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유관기관에 신청

담당부처

- 교육부

장애인

01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2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3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3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6만 6,000원) 지급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4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내용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6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방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대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2개월 간)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8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9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한쪽(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
  - 서비스제공 월 120시간 이내 원칙

방법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1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방법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타 지원

0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 원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2 입양아동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내용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55만 1,000원
	의료비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참고(본 책자 167p)
입양축하금		1회 200만 원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방법

-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4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경찰청

05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10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방법

•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6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방법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소*)에 문의·상담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ncrc.or.kr) 참조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7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동

내용

-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기존 진단결과 및 선별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내용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

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0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14만 5,296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936만 9,209원) 이하

내용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정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관련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알아두면 쓸데있는 **대한민국 육아정보 2022**

2022년 8월 인쇄
2022년 8월 발행

발 행 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발 행 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화 I 02-6901-0100 팩스 I 02-6901-0141

디 자 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